
I. 테마진단

◆ OECD 국가의 퇴직금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김동겸 선임연구원

1. 검토배경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에도 퇴직자(퇴직연금수급대상자)의 대부분이 퇴직금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의 퇴직금부 연금화 관련 정책과 동향 등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됨.

○ 특히, 국민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수급률이 31.2%에 불과해, 노인 빈곤율 심화의 한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퇴직금부의 연금화가 보다 요구됨.

■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55세 이상 퇴직자의 96.9%가 일시금으로 퇴직금부를 수령(2015년 1/4분기 기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으로의 전환(연금수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¹⁾

○ 퇴직금부의 연금수령은 수급자 기준으로 3.1%, 금액 기준으로 0.9%에 불과해 연금으로의 전환을 통한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이 미흡함.

○ 이와 같은 현상은 중간정산에 따른 연금재원 소진, 연금세제 혜택 부족으로 인한 일시

1) 금융감독원(2015).

금선호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중심의 사적연금 대책(2014년 8월 27일)”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 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룸.
 - 그러나 발표된 연금전환 대책을 보면 연금세제 관련 대책에 국한되어 있고, 그 내용도 연금수령 시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감면을 더 부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연금전환 대책은 고령화를 일찍이 경험한 OECD 국가의 퇴직금부 연금화 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대책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연금화 관련 정책과 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한 후에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여 보고자 함.

2. 퇴직급여상품의 유형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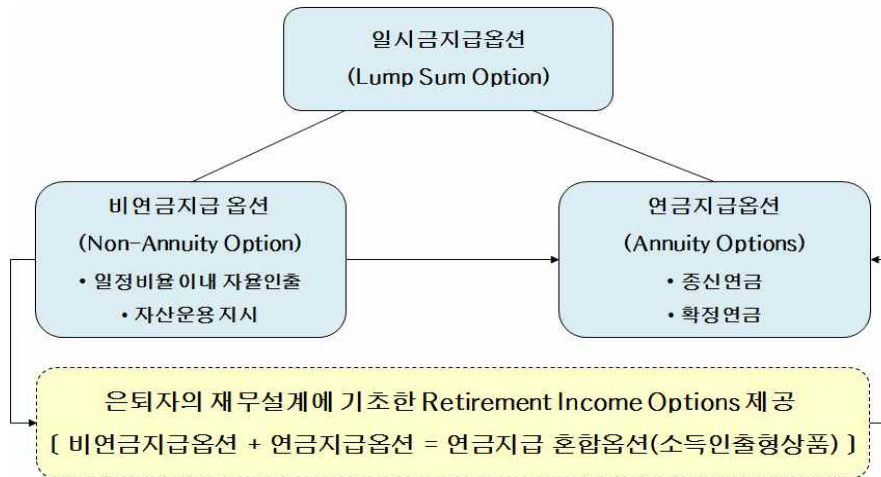
퇴직급여상품은 인출단계에서의 지급방식을 기준으로 일시금, 종신연금, 소득인출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일시금 수령은 현금유동성이 높은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재원을 조기 소진할 경우 추가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워 타 지급옵션에 비해 개인의 장수리스크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음. 반면, 종신연금의 경우 사망 시까지 연금수급이 가능함에 따라 개인의 장수리스크 해지를 통해 노후빈곤을 완화할 수 있음. 소득인출형 상품은 일시금과 연금옵션이 결합된 상품으로, 인출액 조정 등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수 있음.

가. 퇴직금부 지급 형태

- 연금상품은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연금수령 시점까지 연금재원을 납입하고 운용하는 적립단계(accumulation phase)와 축적된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으로 전환하는 인출단계(decumulation phase)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금상품을 통해 은퇴 이후의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하고자 하는 연금화(annuitization) 전략²⁾은 이 중 인출단계에 해당함.

-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퇴직급여상품은 인출단계에서의 연금지급방식을 기준으로 (1) 일시금, (2) 종신연금, (3) 소득인출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1〉 지급옵션의 유형



자료: 성주호(2014)의 그림을 일부 수정.

- 일시금(Lump Sum)은 축적된 연금자산을 일시에 전액 수령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전하는 형태로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을 수 있음.
 - 적립금을 은행구좌, 은퇴저축계좌 등에 이전시키고 필요 시 인출³⁾
 - 적립금을 활용하여 소득창출이 가능한 금융상품 구매
 - 소비활동을 위한 인출(funding immediate consumption), 채무상환(repaying debt)
- 종신연금(Life-time Annuities)은 전 생애기간 동안 급부 제공을 통해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해지해 주는 상품임.
 - 종신연금상품은 연금지급기간, 연금수령액, 연금수령시점 등 각 기준에 따라 연금의 종류를 세분화 하는 것이 가능함.⁴⁾
- 소득인출형(Income Drawdown) 상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인출금액을 제공하는 상품으

2) 본 고에서 연금화(annuitization)의 의미는 (1) 근로기간 동안 축적한 적립자산 전체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더불어, (2) 퇴직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자산으로 종신연금을 포함한 일반 연금상품 등을 구매하는 소득인출형(Income Drawdown) 상품까지를 모두 포괄함.

3) 뉴질랜드의 KiwiSaver Account가 이에 해당됨.

4) 연금상품 구입시점과 연금 수령시점의 일치여부 기준으로는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과 거치연금(deferred annuity)으로 구분할 수 있음.

로, 일반적으로 연금전환옵션과 일시금옵션이 결합되어 있음.⁵⁾

- 소득인출형 상품은 퇴직자의 일시금 선호 현상을 반영해 적립액의 일부에 대해 일시금 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 적립자산은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방식으로, 프로그램 인출방식(Program Withdrawal)⁶⁾이 이에 해당함.

나. 지급형태별 주요 특징

■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는 개인이 기대여명 이상으로 생존하여 생기는 위험으로, 은퇴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자금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

- 장수리스크는 낮은 투자실적, 높은 인플레이션,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의 요인과 결합되어 근로 기간 동안 축적한 자산이 실제로 필요한 노후자금 수준을 하회할 수 있는 위험으로 작용함.

■ 종신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 상품은 장수리스크, 유동성, 소비자의 니즈 반영 등에서 볼 때 각기 장·단점이 존재함.

- 종신연금은 가입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해 줌으로써 일시금 수령에 비해 자산소진 위험을 축소시켜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줌.⁷⁾
- 반면, 현금 유동성 수준은 타 지급옵션에 비해 낮은 단점이 있음.
- 일시금은 현금 유동성 수준이 높은 장점은 있으나, 일시금으로 수령한 연금액을 조기 소진할 경우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없어 타 지급 옵션에 비해 장수리스크가 크다는

5) 인출형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영국을 들 수 있음. Finance Act 2011을 통해 Income Withdrawal이 현재의 Drawdown Pension으로 명칭이 변경됨. 연금이 개시되는 연령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55세부터 개시가 이루어짐.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퇴직, 55세 이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인출이 가능함. 연금지급단계의 상품 중 소득인출형 상품은 도입초기 4.8%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매년 비중이 확대되어 2013년 기준 16.2%를 차지하고 있음.

6) 프로그램인출은 개인이 근로기간동안 축적한 퇴직자산을 이용하여 본인의 펀드를 개설한 후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소득창출을 위해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출하는 구조임. 동 방식은 연금방식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Systematic Withdrawal Plan, 영국에서는 Income Drawdown, 호주에서는 Allocated Product 혹은 Market-linked Income Stream이라는 명칭으로 활용되고 있음.

7) Yari(1965)는 위험회피성향을 보유한 개인이 상속통기가 없는 경우 장수 위험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산을 연금화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 위험회피자의 경우 자산의 고갈위험 또는 수익률 저하로 인한 자산 손실 위험을 종신연금(life annuity)을 판매한 금융기관에 전가시킴으로써, 생존기간 동안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안이 최적의 의사결정이 될 수 있음.

문제가 있음.

- 소득인출형 상품의 경우 연금전환시점을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고 개인의 다양한 니즈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장점이 존재함.
- 반면, 일반 연금상품보다 높은 비용과 매년 인출비율을 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며, 종신연금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 퇴직급여상품별 주요 리스크 보장범위

구분	해당 리스크 보장 여부			추가적 혜택	
	투자	물가상승	장수	상속	유동성
실질 정액형 종신연금(Fixed Real)	○	○	○	제한적	×
명목 정액형 종신연금(Fixed Nominal)	○	○	×	제한적	×
실질 증액형 종신연금(Escalating Real)	○	○	○	제한적	×
실질 증액형 종신연금(Escalating Nominal)	○	○	일부	제한적	×
변액종신연금(Variable) : 최저보장옵션	○	○	가능	제한적	×
프로그래밍인출(Lifetime Phased Withdrawals)	×	×	가능	○	×
유기연금(Term Annuities)	×	가능	가능	○	×
일시금(Lump Sums)	×	가능	가능	○	○
자가연금(Self-annuitization)	×	가능	가능	○	○

자료: Rocha et al. (2011).

3. OECD 국가의 퇴직급여 연금화 동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준은 각국의 문화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미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중시하여 연금으로 전환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는 연금수령 의무화, 연금세제 강화, 자동가입장치 마련 등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함. 특히, 퇴직급여 지급방식을 보다 다양화하여 소득인출형 상품(일부 일시금, 일부 연금) 등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금화 유인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함.

가. 현황

1) 퇴직연금유형별

■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의 퇴직급부 지급형태(예: 미국)를 보면 DB형 퇴직연금, C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순으로 연금으로 전환(연금화)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DB형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퇴직급부 지급형태를 연금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비중은 최대 88%에 이르고 있어 연금전환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CB형 퇴직연금⁸⁾의 경우, 최대 41%까지 근로자가 연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처럼 DB형 퇴직연금이나 C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아닌 기업에게 연금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음.

■ 특히, 근로자가 자산운용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자율적으로 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DB형 퇴직연금 등에 비해 연금전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2〉 연금제도 형태별 연금전환 비율(예: 미국)

연금제도 형태	주요 연구	연금전환 비율
Defined Benefit Plans	Hurd and Panis(2006)	61%
	Benartzi et al.(2011): IBM employees	88%
	Mottola and Utkus(2007)	27%
	Benartzi et al.(2011)	53%
DC - 401(k)	Schaus(2005)	6%
Cash Balance Plans	Mottola and Utkus(2007)	17%
	Benartzi et al.(2011)	41%

자료: Benartzi et al.(2011).

8) CB(Cash Balance)형은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특징이 결합된 상품으로, 적립금액은 DC형처럼 변동하지만, 기업이 운용책임(예: 최소급부보장)을 담보하고 있는 제도임.

2) DC형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OECD 국가의 퇴직금부 지급형태를 보면 각국이 보유한 연금상품, 사회보장제도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 연금으로 전환이 높은 국가로는 네덜란드, 칠레, 스위스 등이며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대적으로 연금으로 전환이 매우 낮은 국가임.

〈표 3〉 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수령형태 비교

구분	종신연금	소득인출형 상품	일시금
호주	낮음(1% 미만)	약 50%	약 50%
뉴질랜드	0%	미개발	대다수
미국	은퇴자의 9%	N.A.	N.A.
캐나다	30%	DC형의 대다수	N.A.
아일랜드	DC 펀드의 30%	DC 펀드의 50%	비과세 일시금 인출
스위스	80%	N.A.	20%
덴마크	종신연금 구매의무화 (적립액의 52%)	46% (확정기간부 연금)	2%
네덜란드	100%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N.A.	N.A.
싱가포르	100%(종신연금 구매를 위한 최소액 별도 적립)	미개발	최소금액 초과분에 대해 일시금 수령
칠레	은퇴자의 60%	은퇴자의 40%	N.A.
영국	은퇴자의 대다수	은퇴자의 일부분	비과세 일시금 인출

자료: Oxera(2015).

- 네덜란드는 은퇴자의 100%가 종신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80%, 칠레는 60%가 종신연금으로 수령하여 연금으로의 전환이 매우 높음.

- 이에 반해 호주는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소득인출형 연금,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각각 50% 수준에 이름.

■ 개인의 선택권이 많이 부여된 미국, 호주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상대적으로 일시금에 비해 연금으로의 전환이 낮은 수준임.

-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는 일시금수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체기능을 하는 국가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국민연금을 민영화한 칠레와 더불어 유럽복지국가인 스위스, 덴마크 등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표 4〉 OECD 주요국의 연금수령수준 및 내용(DC형 퇴직연금 기준)

연금수령	대표국가	세부내용
매우 높음	스위스(80%)	높은 연금지급비율, 지급단계의 선택방식 제한
높음	칠레(60%)	제한된 상품선택 구조, 소득인출형 상품 옵션 활성화
보통	아일랜드(30%)	소득인출형 상품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활성화
낮음	미국(9%)	옵션 범위 다양화, 연금상품에 대한 유인 미흡
매우 낮음	호주(1%), 뉴질랜드(0%)	세제, 자산조사 등 연금 수령 시 이익 전무

자료: Raven(2014), Drivers of Investment Decisions in the Decumulation Phase.

- 또한, 연금과 일시금지급 방식을 결합한 소득인출형 방식으로 퇴직급부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급부 지급방식의 다양화 경향이 나타남.

-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칠레의 경우, 소득인출형 상품 등을 통해 다양한 퇴직급부 지급방식이 존재함.

나. 특징

- 연금화 수준은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정책적 측면, 연금세 제적 측면, 소비자의 인식 및 행태적 측면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1) 퇴직급부 수령 관련 정책

- 퇴직급부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전환하는 국가의 특징 중 하나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임.

-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은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함.

- 영국의 경우 2011년 4월 이전에는 Finance Act를 통해 75세 이전에 연금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⁹⁾
- 연금자산의 의무연금화 정책은 1921년 Finance Act를 통해 시행되었으며, 1976년 연금화 상한연령을 75세로 조정함.¹⁰⁾

〈표 5〉 퇴직금부 관련 규제 비교

구분	종신연금	소득인출형 상품	일시금
호주	허용	허용	허용
뉴질랜드	허용	허용	허용
미국	허용	허용	허용
캐나다	허용	원칙적으로 허용	DC제도에 국한
아일랜드	허용	소득이 큰 경우 허용	25% 비과세
스위스	디폴트옵션	금지	허용
덴마크	거치연금 형태	금액제한	허용
네덜란드	의무화	금지	금지
싱가포르	의무화	금지	금지
칠레	디폴트옵션	프로그램인출 제한	금지
영국	허용	상한·유연인출상품 운영	25% 비과세

자료: Oxera(2015).

■ 특히, 공적연금의 민영화로 인해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칠레의 경우 소득인출형 수령이나 일시금수령을 제한하고 연금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 반면, 연금화 수준이 낮은 호주와 미국의 DC형 제도에서는 연금전환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급부수령을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9) 영국의 경우 칠레와는 다르게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형태이나 연금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취한 이유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퇴직연금의 역할을 증대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음. 영국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 연금자산의 75% 이상을 종신연금(annuity)으로 수령하도록 의무화하여, 25%까지만 일시금 인출을 허용함. 법 개정으로 2015년 4월 이후 연금화 수령의무가 없어져 가입자의 자산선택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급여의 25%까지는 비과세로 일시금수령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한 근로자는 나머지 75%로 종신연금이나 분할지급방식을 선택함.

10) Sheshinski and Eytan(2008); 홍원구(2014).

■ 이와 같은 퇴직급여에 대한 연금의무화 조치와 더불어 영국, 칠레 등에서 시행 중인 지급 옵션에 대한 정부의 규제 또한 근로자의 연금전환에 큰 영향을 미침.

- 칠레는 부분 일시금 인출은 허용하지 않고, 전부일시금 인출은 적립금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허용함.
- 영국은 연금전환 시 최대 25%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잔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50세와 75세 사이에 연금으로 전환해야 함.
 - 적립금이 법정적립금(Statutory Lifetime Allowance)의 1% 이하인 경우에만 전액 일시금 수령이 가능함.
- 스위스는 종신연금형태로의 전환만 허용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인출은 불허함.¹¹⁾

〈표 6〉 퇴직금부의 지급 옵션 비교

구분	지급단계 옵션
호주	· 연기금(Superannuation Fund) 유지, 일시금 인출 · 소득인출형(Income Stream) 상품으로의 전환: Account-based Pension, Annuity
캐나다	· 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Income Drawdown) 상품: RRIF, LIF
칠레	· 계획인출형(Retiro Programado), 즉시연금(Renta Vitalicia Inmediata), 거치연금(Renta Temporal con RV Diferida), 인출옵션이 부과된 거치연금(RV Inmediata con Retiro Programado)
덴마크	· 종신연금(Lifetime Annuities), 유기연금(Term Annuities), 일시금
뉴질랜드	· 본인의 의사에 맞게 KiwiSaver 계좌에 축적된 자산을 인출, 일시금
스위스	· 연생종신연금(Joint Life Annuity), 일시금

자료: Oxera(2015).

2) 연금관련 세제혜택

■ 퇴직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과세체계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입하는 보험료, 적립단계에서 발생한 투자수익, 은퇴 이후 인출하는 적립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따라 분류 가능함.

- 퇴직연금 과세체계방식은 TEE방식과 EET방식 등으로 구분되며,¹²⁾ OECD 대다수 국가에서는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EET방식으로 운영함.

11) 2005년부터 적립금의 25% 이상을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도록 함.

12) TEE(Tax Exempt Exempt)형은 연금 납부단계 과세 또는 소득공제 불인정, 운용단계 운용이득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연금수령단계에서는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하는 과세제도임. EET(Exempt Exempt Tax)형은 연금납부단계에서는 과세면제 또는 소득공제, 운용단계의 운용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연금수령단계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임.

〈표 7〉 퇴직연금 과세체계 비교

과세체계	주요 국가
TTE(Tax Tax Exempt)	호주, 뉴질랜드
EET(Exempt Exempt Tax)	캐나다,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ETT(Exempt Tax Tax)	덴마크
EEE(Exempt Exempt Exempt)	싱가포르

■ 특히,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는 보험료 납입과 퇴직적립금 축적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인출단계에는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TTE(Tax Tax Exempt)방식을 띠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일시금수령 시에 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적용을 받은 연금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일시금으로 전액인출을 선호함.

■ 반면 근로기간 동안 축적된 자산을 이용하여 은퇴시점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은 영국은¹³⁾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령 시 보다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¹⁴⁾

○ 즉, 2015년 4월 이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자산의 25%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로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나, 18,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적립금에 대한 일시금 인출은 고액 세율(55%)이 적용되는 패널티를 부여하여 일시금 인출을 억제함.¹⁵⁾

- 적립자산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이 종신연금상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으며, 75세 이전까지는 일정범위 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함.

13) DC형 가입자의 약 3/4 정도가 은퇴시점에 연금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됨(PPI(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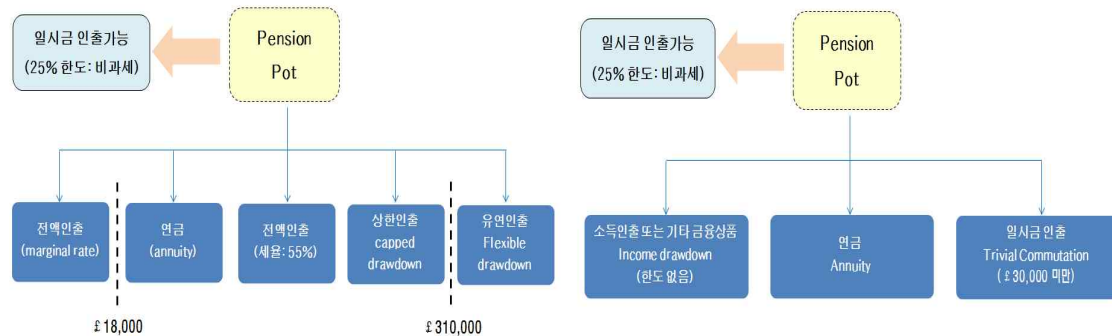
14) Pension Policy Institute(2015), Freedom and Choice in Pensions.

15) 전액인출이 가능한 소액적립자산의 한도를 18,000파운드로 설정하고 있음.

〈그림 2〉 영국의 급여지급형태 변화

[제도변경 전 : 2015년 4월 이전]

[제도변경 후 : 2015년 4월 이후]



자료: Pension Policy Institute(2015).

○ 그러나 2015년 4월 이후 퇴직자들이 본인의 한계 소득세율(marginal tax rate)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경우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

- 즉, 적립자산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로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인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됨.

■ 또한, 연금전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뉴질랜드나 호주는 퇴직금부 지급단계에서 연금수령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시금수령에 비해 미흡한 경향이 있음.

○ 2007년 KiwiSaver 제도¹⁶⁾를 도입한 뉴질랜드는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미흡으로 지급단계에서 연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¹⁷⁾

○ KiwiSaver 펀드를 통한 자산축적단계 동안 발생한 투자수익은 개인소득수준에 따라 10.5~17.5%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급단계에서는 30% 연금소득세를 부과함.¹⁸⁾

■ 이러한 과세체계와 더불어 유산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상속세(inheritance tax) 등에 의해서도 연금화의 수준차이가 발생함.

16) 뉴질랜드는 가계저축률 증대 및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가계자산을 조정하기 위해 Opt-out에 기초한 DC형 퇴직연금제도인 KiwiSaver 제도를 도입함. 동 제도는 정부의 규제대상이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정부보증이 없음.

17) 뉴질랜드의 경우 연금자산의 인출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

18) Oxera(2014).

- 상속세가 없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상속세가 있는 칠레(25%), 스위스 등을 비교해 볼 때, 상속세 존재여부에 따라 연금전환 비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경우 1992년 상속세 폐지로 인한 유산상속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 발생으로 종신연금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

3) 연금화 유인 상품개발

■ 실질적으로 연금을 구매하는 소비자(근로자)가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호할 수 있도록 연금화 유인 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짐.

-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연금상품에 의해 헤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수리스크헤지 연금상품(고령친화형 연금상품)이 개발되어 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함.
- 고연령거치연금(Advanced Life Deferred Annuity), 증액연금(Enhanced Annuities) 등이 대표적인 고령친화형 연금상품임.
- 특히, 고연령거치연금은 보통 가입자가 퇴직금의 일부를 거치종신연금으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거치기간에 걸쳐 모두 인출하도록 설계되어 연금지급 개시 전 일시금을 소진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존재함.

■ 또한, 호주,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영국 등은 다양한 옵션을 포함한 소득인출형 상품 등을 개발하여 퇴직금부의 일부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

- 미국은 초기인출 가능한 확정기간형 연금 등을, 덴마크는 가입자와 배우자의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인출하는 상품 등을 개발하여 연금으로의 전환을 유인함.

〈표 8〉 퇴직급여의 연금화 상품 개발 사례 비교

구분	종신연금	소득인출형 상품
호주	- 고연령거치연금(Longevity Pensions)* * 연금개시연령 85세 - 프로그램인출	다양한 옵션을 포함한 소득인출상품개발 (Account Based Income Stream)
미국	- 변액연금 - 최저보증급여 - Continual Payout Plans	- 초기인출 가능한 확정기간형 연금 (Modified Guaranteed Annuities) -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한 BlackRock CoRI 은퇴지수 개발
캐나다	최저보증이 있는 변액연금 공급	감독규정에 승인펀드, LIF 옵션 명시
아일랜드	-	개인이 직접 투자안을 선택하여 운영
덴마크	-	가입자 및 배우자의 기대여명을 고려 → 인출액 결정
칠레	-	프로그램인출 옵션 활성화: 연금화 금액의 200%까지 인출 가능
영국	- 증액연금(Enhanced Annuities) 활성화* * 연금시장의 28%(2013년 말 기준)	- 상한인출(Capped Drawdown) - 유연인출(Flexible Drawdown)

4) 소비자 인식 및 행태

■ 근로자의 은퇴 이후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연금상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규제·정책, 세제혜택 등과 같은 명시적 요인 외에도 심리적 요인 등 비명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비명시적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선호(consumer preference), 금전적 가치에 대한 인식(perceptions of value for money), 소비자 행태(consumer behaviors) 등이 있음.
- 소비자 선호체계는 각국의 문화차이로 발생하는 특정자산 및 소비에 대한 니즈 차이로, 예를 들어 호주의 주택구입을 위한 일시금 선호, 싱가포르에서의 유산상속 동기 등을 들 수 있음.
- 소비자 행태로는 디폴트옵션의 영향, 손실발생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회피 성향 등을 들 수 있음.

〈표 9〉 연금관련 소비자 인식 행태 비교

선호체계(Preference)	인식(Perception)	소비자행태(Behaviour)
·리스크 · 수익 간 상충 - 연령, 소득별, 투자수익률	·연금에 대한 저평가 - 낮은 국채수익률	·고정관념에 기초한 선택(framing)
·초기자본에 대한 수요	·상품유연성에 대한 니즈	·근시안적 행태(myopic) - 기대여명에 대한 과소 평가
·유산상속 동기	·연금 - 사망 시 자산 소진	·손실회피성향(loss aversion) -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을 우려
·초기대안 선택에 대한 유인	·사회적 관습	·관성(inertia) - 저관여, 자동가입 선택

자료: Raven(2014), Drivers of Investment Decisions in the Decumulation Phase.

■ 특히, 소비자 행태경제학에서는 개인이 바로 행동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을 연기하는 미루기(Procrastination)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미루기 현상은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소비하는 행태가 발생하는 등 개인의 재무계획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구조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선진국들은 자동가입¹⁹⁾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가입을 촉진하고 은퇴 후 연금수령으로 유도하고자 노력함.²⁰⁾

○ 예를 들어, 은퇴저축 계획을 제공하는 미국의 고용주 대부분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기를 기다리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퇴직연금 자동가입을 통해 연금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 자동가입(auto-enrollment)에 동참한 기업의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연금수령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 신규채용자의 85% 이상이 퇴직저축계획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자동가입 이전 가입률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임.²¹⁾

19) 자동가입은 상품, 정책 또는 법률관계가 기능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나 연건으로, 이용자, 관련자 또는 당사자들이 그것들을 바꾸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적용됨. 바로 행동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을 연기하는 미루기(Procrastination)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기본 상품을 설정하는 것임.

20) Lauren E. Willis(2013), When Nudges Fail - Slippery Defaults,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 특히, 영국 등은 자동가입과 저축액 증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입을 유도하고 연금수령을 통한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에 노력함.
- 따라서 이 제도의 첫 번째 도입목적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입 유도이며 두 번째 목적은 퇴직금부의 연금전환 유도로 안정적인 노후보장 강화에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OECD 국가의 경우 대체로 정부정책에 의한 연금수령 의무화보다 다양한 연금지급옵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함. 이런 OECD 국가 연금화정책 동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부 일시금수령을 허용하되, 일정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연금화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퇴직금부 지급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소득인출형 상품개발 등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시금수령에 비해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을 보다 부여하는 한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동가입제도 도입을 통한 가입 확대 및 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지금까지 DC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연금화 현황 및 특징 등을 살펴 볼 때, 각국가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정책적 특성 등에 따라 연금화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모든 운용리스크를 부담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보다 연금전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즉, 정부의 정책에 의한 연금수령 의무화보다는 다양한 연금지급옵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금화 관련 정책이 변화함.

- 칠레 및 유럽의 주요 복지국가 등은 법적·제도적으로 연금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앵글로색슨 국가 및 오세아니아 국가 등은 근로자 선택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화를 유도함.

21) William E. Nessmith, Stephen P. Utkus, and Jean A. Young(2007),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Automatic Enrollment, Vanguard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 이러한 OECD 국가의 연금화 동향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부 일시금수령을 허용하되, 일정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연금화 정책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퇴직금부의 연금전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큼.
 - 선진국은 대체로 DB형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비율이 5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을 합한 전체의 연금수령 비율이 3.1%에 불과함.
- 이런 점에서 퇴직금부를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역할이 요구되며 점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는 자율적 연금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그 이유는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산층 근로자가 투자실패로 연금재원을 소실할 경우 개인의 장수리스크뿐만 아니라 국가의 고령화리스크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개인의 자율권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권(정책적 연금화)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연금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금부가 일시금 또는 연금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 근퇴법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방식이 다양화(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하여 수령)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전에 연금으로 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고령친화형 연금상품 개발 및 지급옵션이 부여된 소득인출형 상품 개발 등을 정부차원에서 독려하고, 연금중심의 연금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선진국처럼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동가입을 허용하여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연금전환을 통해 이들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보다 제고되도록 제도적 차원의 보완이 요구됨.

〈참 고 문 헌〉

- 금융감독원(2015), 「15.3월 말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 10), “금융투자회사의 윤리·준법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
- 김지희(2012),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선 연금화가 장려되어야」, 한국투자증권.
- 김태우·김치완(2014), 「사적연금 시장의 연금화 전략과 시사점」, 『생명보험협회지』, 생명보험협회.
- 남수정(2013), 「필요노후생활비와 개인연금불입액의 종단적 분석: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적용」, 소비자학 연구, 제24권 제1호.
- 노형식(2011), 「장수위험 대비를 위한 연금화 활성화의 과제」, 금융포커스, 금융연구원.
- 류건식(2014), 「사적연금의 연금화 필요성과 과제」, 주간포커스, 보험연구원.
- 박상규(2014), 「퇴직연금 급여의 연금화 유도방안」, 한국투자증권.
- 성주호(2014), “사적연금제도의 Vision & New Paradigm”, 100세 시대, 신성장 동력과 사적연금, 한국 보험학회 창립 50주년 맞이 한·일 특별세미나.
- 여윤경(2014), 「장수리스크 감소를 위한 은퇴자산의 인출전략에 관한 연구」, Vol. 27 No. 1, 산업경제연구.
- 이경희(2013), 「세제적격 개인연금 계약자의 지급옵션 선택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71권, 보험개발원.
- 정승희·최현우(2010), 「해외 퇴직급여상품의 발전동향 및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주소현·김세완(2012), 「기대수명 증가와 종신연금」, 소비자학연구, 제23권 제4호.
- 진익(2013), 「연금 수수께끼(Annuity Puzzle)와 개인연금 활성화 과제」, 주간포커스, 보험연구원.
- 최윤호(2014), 「연금퍼즐에 대한 계리적 분석 및 대안적 연금설계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원구(2014), 「영국 DC형 퇴직연금 인출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자본시장 Weekly, 자본시장연구원.
- AON Hewitt(2011), 고령화 대비 금융상품의 활용.
- Banerjee, Sudipto(2013), Annuity and Lump-Sum Decisions in Defined Benefit Plans: The Role of Plan Rules, Issue Brief, No.381,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 Benartzi, Shlomo, Alessandro Previtero, and Richard H. Thaler(2011), “Annuitization Puzzl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5(4): 143-64.
- Butler, Monika, and Federica Teppa(2007), The Choice between an Annuity and a Lump Sum: Results from Swiss Pension Fun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